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3년 11월 1일

CUOMO 주지사, 오늘 자로 새로운 강력한 DWI 법이 발효된다고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조건부 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이제부터 중범죄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같은 처벌입니다. 오늘 이전까지 조건부 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교통 위반으로 처리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강력한 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리안드라 강화법안(Leandra’s Law)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위험하고 무책임한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고 자신과 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뉴욕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조건부 면허증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었으나 차량국(DMV)가 운영하는 알코올마약재활프로그램에 등록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부되었습니다. 조건부 면허증은 직장, 학교, 병원 예약과 같은 중요한 일을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리안드라 강화법안을 강화하는 몇 가지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경범죄나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 또는 기타 알코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소유하였거나 조작한 차량의 자동차 점화 장치 필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점화 장치는 음주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안드라 강화법안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11살난 Leandra Rosado의 이름을 따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와 같은 점화장치 설치 요건 외에도 음주 상태에서 16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차를 운전하는 것을 중죄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이 법이 발효된 이후 뉴욕주에서 3,300여명이 리안드라 강화법안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Korean

- 법원이 자동차 점화 장치 설치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정에서 선서한 사람이 자신이 자동차 주인이 아니고 자동차 점화 장치 제한 기한 동안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이 입증될 때로 제한한다. 법정 선서를 한 상태에서 위증할 경우 위증죄로 간주한다. 2013년 6월자로, 14,000여명의 운전자가 차량에서 자동차 점화 장치를 설치하였다.
- 청소년 범죄자들이 성인과 동일한 자동차 점화 장치 요건에 적용 받는지 명확히 한다.
- 처분 판정을 내리기 전에 예방 조치로 자동차 점화 장치의 도입을 인가한다.
- 자동차 점화 장치 설치를 위한 최소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